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전북특별자치도와 국가공기업
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규정
제정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전북특별자치도와 국가공기업 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」이 2023. 1. 17. 제정(2024.
1. 18. 시행)되어, 동 법률에서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협조에 관한 사항 및
분야별 발전협의회 구성·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
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국가공기업의 범위 및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2조)

국가공기업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사무소를 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
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고, 도지사가 국가공기업에 전북
자치도의 발전과 관련 있는 사항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할 수 있도록
함.

나. 분야별 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3조)

국가공기업의 임직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, 전북특별
자치도 소속 국장급 공무원, 전북특별자치도 산하 지방공기업 등의
장, 그 밖에 국가공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20
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전협의회

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전북특별자치도와 국가공기업 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규정 (안)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에 따른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협조에 관한 사항 및 발전협의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국가공기업의 범위 등) ① 「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7조에 따른 국가공기업(이하 “국가공기업”이라 한다)은 전북특별자치도(이하 “전북자치도”라 한다)에 사무소를 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.

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공기업이 전북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투자와 사업 등으로서 전북자치도의 발전과 관련 있는 사항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그 국가공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.

제3조(분야별 발전협의회 구성·운영)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발전협의회(이하 “발전협의회”라 한다)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발전협의회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전북자치도의 부지사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

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.

1. 국가공기업의 임직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

2. 전북자치도 소속의 국장급 공무원

3. 전북자치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장

4. 그 밖에 국가공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협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발전협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339